

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

노동조합의 명칭			노동조합의 형태	단위노조(전국, 기관, 지역, 기타), 연합단체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	
대표자	성 명			
	주 소			
보완 요구사항			보완기한	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

직인

※ 비고: 보완 요구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.

※ 만약 위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